

31. 대학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판례집 15-1, 176>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규정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교원으로 10년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 전 직권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학교법인이 청구인을 복직시키지 않아 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자신에 대한 무효의 면직처분 및 복직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구 사립학교법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선언하는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항)하였으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제 본연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임용의 거부사유 및 구제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정관이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자의적인 재임용거부로부터 대학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 즉, 임면권자가 대학교원을 왜 재임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당해 교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적법절차의 최소한의 요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은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공권력 등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다양한 임용방식 중 당해 대학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국·공립대학과는 다른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개개의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6헌바33 결정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 그 견해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 사후경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결정 후에 개선입법작업을 추진하여 2005. 1. 27.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등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법률 제7352호).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2헌바14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 조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규정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위 교원지위법조항 소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 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위 조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거부된 대학교원의 경우 이외에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규정의 범위 안에서는 합헌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판례집 15-2(하), 466].